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40
----------	------

제출일자 : 2018. 12. 5

제출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가. 달성군 관내 학교 학생의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성장기 학생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나. 상위법 개정 및 목적 실현을 위해 현행 조례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여 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학교급식경비 규정 마련(안 제2조 제3호)
- 나. 식품비 인용문구 정정(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 다. 상위법 개정 및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정비(안 제3조)
- 라. 조항 항목에 맞게 정비(안 제4조, 안 제9조, 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학교급식법」 4조

(2) 「학교급식법」 8조

(3) 「학교급식법」 9조

나. 예산조치 : 20,667백만원(세부내용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타사항

(1)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입법예고 : 2018. 10. 18 ~ 11. 7(20일간)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에 기여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수·축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 농·축산물, 우수 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 “학교급식경비”란 식품비, 급식 운영비 등 학교 급식의 운영과 식재료의 공급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 “식품비”란 학교 급식에 사용될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필요한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에 지출되는 비용 또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구입에 지출되는 비용을 말한다.
5.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학

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대상 학교
2. 그 밖에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4조(학교급식지원)

-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학교 급식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농·수·축산물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 ①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초·중학교는 달성교육청을 통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이를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총 학교급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 시행계획 등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 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자 선정
2. 학교급식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심의·결정
3. 학교급식지원 사업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군수 및 관련 국·과장
2.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
3. 달성교육청 급식 담당과장
4. 교사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5.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자 2인
6. 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한 자 2인
7.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8. 축산단체(협동조합)에서 추천한 자 1인
9. 학교급식개선운동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표결권을 가진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식재료 공급자의 의무)

- ① 식재료 공급자는 학교급식 식재료에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수·축산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 ② 식재료 공급자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단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우수 농·수·축산물 공급내역을 군수가 요구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급식학교 등의 의무)

- ① 학교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② 학교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학교급식경비를 학교 급식 운영 및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 ③ 학교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매년 지원금 정산내역을 매분기 종료 후 20일 까지 초·중학교는 달성교육청을 통하여 이를 군수에게, 고등학교는 이를 군수에게 직접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학교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급식경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학교급식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 ① 군수 및 학교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 대상 학교의 급식에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운영 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학교급식경비가 학교 급식 운영 및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지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품질이 의심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직접 품질검사를 하거나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시 식재료 공급자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내역에 관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학교급식법」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 3. 21.>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8조(경비부담 등)

- 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 ②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③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7. 10. 17., 2010. 7. 23.>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가. 기 간 : 2019년부터 실시

나. 주요내용 : 학교급식 경비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 발달에 기여하며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가. 급식경비 지원

○ 급식 단가 X 급식 일수 X 급식 인원 ※ 중식(1식)만 지원

3. 관련조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4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9년부터 신규로 추진 예정인 사업에 대한 비용만 추계

○ 현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학생 수 변동요인 반영

나. 추계 결과 : 9,250백만원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시행대상	중·고	중	중·고	중·고	중·고	중·고	
지원인원	42,700	6,200	9,000	9,100	9,200	9,200	
지원예산	9,250	406	2,134	2,196	2,257	2,257	중학교 3,730원 고등학교 : 3,740원

다. 재원조달방안 : 군비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정책관광국 정책사업과 류인아